

하도급



건설현장내 건설기계조정사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 판단기준 변경 (공단 내무 지침서)

	2018년		2019년	
	고용	산재	고용	산재
장비만	X	X	X	X
장비+차주	X	X	X	O
장비+근로자	X	O	X	O



승인하수급의 경우 하수급인이 할 신고

-해당 사업장이 하도급 위치이면서 고용산재 승인을 받았다면

1.현장일괄성립신고

고용산재승인하도급의 경우는 건강연금신고와 별도로 원도급사가 고용산재개시신고를 하고 하수급승인을 받으면, 하도급인은 현장일괄성립신고를 하여 현장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하수급인 명세신고는 원도급에서 하는 신고로 하도급은 해당하지 않고, 당해 현장에 대한 사업개시신고는 원도급에서 하는 신고로 하도급은 하는 것이 아니며, 하수급인 승인 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당해 현장에 대한 사업장관리번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 대해서 이 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하고, 보험료신고에도 현장보험료신고에도 본 현장을 포함 하는 것입니다.

2.건강연금 사업장적용신고

건강연금은 승인 미승인 무관하게 하도급공사의 하수급인이 신고합니다. 공사계약서에 건강연금 보험료금액을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해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정산을 하기도 합니다.



산재·고용보험 보험가입 판단 기준

(산재) 건설현장내 건설기계조종사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 판단기준 변경

「근로복지공단 업무 지침 시달」 산재보상정책과-184('18.1.12)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와 건설기계조종사를 임대계약 형식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에 해당하므로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원청에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무 부과

(고용) 고용보험 보험가입자 판단 질의회신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판단

-다만, 건축·토목공사 등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직접 공사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적용

※「질의에 대한 회신」 고용보험기획과-13132('18.12.31)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조종사의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주체는 그 간 판례 및 내부 규정 등에 따라 공단에서 적용해 온 바와 같이 건설장비운영업자와 원수급인간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



공사형태에 따른 산재·고용보험료

공사형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원도급 공사의 경우	납부 대상	납부 대상
미승인 하도급을 받은 공사	X	X
고용승인을 받은 공사	납부 대상	X
산재승인을 받은 공사	X	납부 대상
고용산재승인을 받은 공사	납부 대상	납부 대상
고용승인을 내려준 공사	X	납부 대상
산재승인을 내려준 공사	납부 대상	X
고용산재승인을 내려준 공사	X	X

재하도급업체의 근로내용확인신고, 건강연금신고

일반적으로 재하도급을 받은 현장에 대한 관리 번호가 부여 되지 않음,
재하도급 공사 현장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신고) 및 건강연금 신고가 불가능.
하지만, 재하도급 공사를 받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재하도급 받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재하도급 받은 사업장의 본사 관리번호(사업자번호+0)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신고) 및 건강
연금 신고 가능함.
재하도급 사업장에서 재하도급사 본사 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신고)를 했다고 해서 고
용 산재보험료를 납부 하는 것음 아니고 보험료는 원도급 또는 하도급이 납부해야 함.
건강연금신고도 재하도급업체본사관리번호로 가능한데, 이 경우 연금건강보험료도 재하도급업체
가 납부함.

고용산재보험료납부의무자는 개시신고를 한 곳이다

개시신고를 어디 사업장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개시신고한곳=원도급=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보며됨



하도급본사로 근로내용확인신고한 경우, 건강연금 현장별 8일기준 적용불가

Q 원도급에서 하수급인 명세신고(하도급관리번호)를 내려주지 않을 경우에 하도급관리번호로 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근로내용신고의 경우는 하도급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했음. 연금건강의 경우 공사기간이 한달이상이고 내역서로 현장적용신고를 했는데 고용산재에 대한 하도급관리번호가 없더라도 연금건강 현장적용신고를 현장별 8일적용해서 가능한가?
즉, 추후에 연금이나 건강에서 추징이 나올 경우 소명자료 제출할 때 하도급관리번호를 부여받지 못해 근로내용신고는 본사관리번호로 신고하고, 연금건강은 현장 적용신고하여 현장별 8일로 신고했을 경우 인정받을수 있을지?

A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에게 하수급관리번호를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수급인본사로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 일용직건강연금은 현장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강연금 현장별 8일기준을 적용받는가 아니면 본사로 보아 8일기준을 적용받는가는 건강연금조사할 때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현장별로 8일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에게 하수급관리번호를 받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산재의 미승인하도급업체의 연금건강신고

Q 전문건설업체임. 종합건설에서 하도급으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맡을예정인데 부가세 포함하여 6천만원이 넘음. 그럼 키스콘에 신고를 해야하는건 알겠는데, 종합건설쪽에서 우리보고 건강,연금,노인장기만 태워서 원가계산서를 만들어 보내주라고 하는데 고용과 산재도 포함되어 원가계산서상에 금액이 나타나야하는게 아닌지?
산재랑 고용이 원가계산서에 없다면 직접노무비가 4천만원이나 되는데 일용직 신고를 원도급에서 다 해주는 건지?

A 하도급업체가 고용산재미승인사업장인 경우 원청의 하수급인명세서 신고를 통한 하수급인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급업체가 하며,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는 현장별 원가명세서가 있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는 하도급업체가 부담하지 않지만, 현장별원가명세서가 없어서 안분비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수급관리번호에 의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급업체가 하는 경우는 원청과 하수급인이 공사계약서만 작성하며 보험료납부인수계약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건강연금은 하도급업체가 스스로 현장신고를 하여 받은 사업장관리번호로 신고납부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

Q 하도급 일용직분들 근로내용확인신고 작성중인데 53년생분들은 고용보험을 안내는데 작성해야 하는가? 고용보험 해당자 비해당자 관련없이 그냥 다 작성하면 되는건지?

A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보험료는 내지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해야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임의가입)근로자의 경우 고용신고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분들 직접 분류를 해서 제외 해야 합니다.

현장의 사업장성립신고서는 공사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Q 하도급 설비업체인데 직원은 없고 일용직만 있음. 일용직을 신고하려고 사업장 신고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원도급에서는 인건비에 관한 계약도 하지 않았고 관리번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원도급 없이 하도급에서 연금건강사업장적용신고서 성립시킬 수 있는지?
(일용직도 인력사무소에서 채용한 상태임)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상태임.

A 고용산재 개시신고는 원도급공사라면 계약서 없이도 신고가능하지만 사업장적용신고는 일용직 여부와는 관련없이 공사계약서가 있어야 신고가능합니다.